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54 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:정춘숙·김민기·김영진

김윤덕 · 김정호 · 민병덕

박홍근 • 윤후덕 • 장경태
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·의료 인·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금전, 물품, 편익, 노무, 향응 등 의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음.

그런데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인·의료기관 대상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 대하여는 제 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고,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(제47조제2항·제3항 및 제47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2항 본문 중 "같다)는"을 "같다)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중 "의약품공급자로부터"를 "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서"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 중 "의약품공급자는"을 "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47조(의약품등의 판매 질서) ① 제47조(의약품등의 판매 질서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의약품공급자(법인의 대표 자나 이사, 그 밖에 이에 종사 하는 자를 포함하고, 법인이 아 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의약 품 채택・처방유도・거래유지 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• 한약사(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 · 의료인 · 의료기관 개설자 (법인의 대표자나 이사, 그 밖 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, 물 품, 편익, 노무, 향응, 그 밖의 경제적 이익(이하 "경제적 이 익등"이라 한다)을 제공하거나 약사 · 한약사 · 의료인 · 의료기 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 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 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

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견본품 제공, 학술대회 지원, 임상시험 지원, 제품설명회, 대 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,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(이하 "견본품 제공등의 행위"라 한 다)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③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 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견본 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범위 안 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~ ⑦ (생 략) ④ · 제47조의2(경제적 이익등 제공 제47조

③의약품
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
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
<u>받은 자에게서</u>
·

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) ①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 내에 약사·한약사·의료인·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장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,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
등) ①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
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
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
② (현행과 같음)